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04525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0452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합5015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이정윤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김선종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합5015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872,903원 및 그중 438,396,43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120,476,47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를’을 ‘피고와 F를’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3행의 ‘상속세 납부일인’을 ‘상속세 납부일 다음 날인1)’으로 고쳐 쓴다.
- 제10면 아래에서 제1행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를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하였음이 분명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의 상속세 부담액을 산정하였는바, 여기에’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21. 6. 29.자 준비서면(참고)과 그에 첨부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채동수, 판사 박혜선

1)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돈 중 구상금 438,396,43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상속세 최종 납부일은 2013. 12. 30.이므로(갑 제7호증의 3), 원고의 소장 제10면(전자기록 기준) 제4행의 ‘상속세 납부일인’은 ‘상속세 납부일 다음 날인’의 오타로 보인다.